

日本 가스사업법 관계법령 등의 개정

- 지하가·지하실의 가스시설보안대책을 중심으로 -

이른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導管 및 가스를 소비하는 기구 등의 안전성은 가스사업법의 관계 법령 즉 가스 사용시설의 기술 기준·(통상산업성령·通商産業省令)·소비(연소)기기의 설치기준(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고 있다.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가 및 지하실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연소기기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개정되었다.

이것은 작년 8월(1980) 「스즈오까」역앞의 빌딩 지하상가에서 대규모의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지하가 등에서의 가스시설 및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이 검토된 결과 개정된 것이다.

개정 省令은 81년 2월 16일 공포되어 8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 省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는 금년 4월 초순에 나올 예정이다.

주된 개정 내용은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가, 지하실에는 가스누설경보설비나 긴급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둘째 가스연소기기는 소정의 견고한 접속구로 가스栓과 접속하여야 할 것 등이다.

〈참고문헌〉

日本 설비와 관리 5월호 p 42(1981)

〈新製品 紹介〉

「200미터의 고층건물에서의 消火와 救助에 곤도라 사용」

서독 WAHLEFELD 社は 고층건물의 소화나 구조활동용 곤도라를 개발하여 서독 국내에서 판매를 개시하였다.

이 곤도라는 고층건물의 화재·구조 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대를 파견하여 곤도라의 전면이나 좌우측에서 Bridge가 열려 소화활동과 부상자 운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 곤도라의 운반에는 윈치를 갖춘 특수차량을 사용, 빌딩옥상의 ARM과 특수차량을 연결하는 로프에 의해 빌딩의 측면을 분당 50M의 속도로 올라간다. 표준설계는 200M의 고층빌딩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주문에도 응하고 있다. 빌딩 측면에서 一定 거리를 두고 올라갈 수 있어서 건물의 돌출부나 발코니등이 장애가 되는 일은 없다. 한대의 수용인원은 12명임.